

협동조합 설립 · 운영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운영]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협동조합 만들기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협동조합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협동조합의 개념과 종류 등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적 사항부터 협동조합 설립하기, 운영하기, 나아가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운영	1
1. 협동조합이란	4
1.1. 협동조합 소개	4
1.1.1. 협동조합이란	4
1.1.2. 협동조합의 특징과 좋은 점	6
1.1.3. 협동조합의 종류	7
2. 협동조합 설립·운영	12
2.1. 협동조합 설립	12
2.1.1. 협동조합 설립절차	12
2.2. 협동조합 운영	15
2.2.1. 기관 및 조직	15
2.2.2. 조합원	21
2.2.3. 사업의 이용	23
2.2.4. 협동조합의 운영	24
2.3. 합병·분할·해산	28
2.3.1. 협동조합 합병	28
2.3.2. 협동조합 분할	31
2.3.3. 협동조합 해산	34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38
3.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38
3.1.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38
3.2.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42
3.2.1. 기관 및 조직	42
3.2.2. 조합원	43
3.2.3. 사업의 이용	44
3.2.4.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47
3.3. 합병·분할·해산	52
3.3.1.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52
3.3.2. 사회적협동조합 분할	54
3.3.3.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57
4. 연합회 설립·운영	60
4.1. 연합회 설립	60
4.1.1. 연합회 설립	60
4.2. 연합회 운영	63
4.2.1. 연합회의 조직	63
4.2.2. 연합회의 사업	66
4.2.3. 연합회의 운영	67
4.3. 합병·분할·해산	70
4.3.1. 연합회 합병·분할·해산	70

1. 협동조합이란

1.1. 협동조합 소개

1.1.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뛰어난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주면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협동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에 제정·시행되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공식 로고

(그림출처 : [서울시 서대문구 공식블로그](#). 서대문 TONG) >

"협동조합"의 의미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 ICA)에서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란 어떤 기구인가요?>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사업을 보급하고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합체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1895년에 만들어졌으며 보통 ICA로 줄여서 부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조직은 총회, 지역총회, 위원회, 감사규제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최고 정책기관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

총회는 2년마다 개최합니다. 지역총회도 2년마다 열리나 총회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지역으로 나누어 개최합니다. 지역총회에서는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역별로 집행하고 지역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며 지역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눕니다. 위원회는 ICA를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예산을 설정하며 회원 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감사규제위원회는 재정상황을 감독하고 총회와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산림청, 산림입업용어사전)

협동조합의 국내외 대표 사례

해외사례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 중 하나인 FC바르셀로나를 아시나요? FC바르셀로나는 축구팬들이 출자한 세계 최고의 명문 축구클럽으로 17만5000여명의 회원(출자자)이 주인인 협동조합입니다. FC바르셀로나의 회원 중 가입 경력 1년 이상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6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서 회장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또 FC바르셀로나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 2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총회는 연간 보고서, 장기 계획, 예산 등을 결의합니다.

또한, 세계의 수많은 통신사 중 '5대 통신사'로 꼽히는 AP통신도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통신사입니다. AP통신의 주인은 바로 미국 내 1400여개의 개별 언론사인데요. AP통신은 이들 언론사들이 발행 부수에 따라 경비를 분담하고 자신을 대표할 이사회를 스스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6천여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미국의 선키스트, 설탕이나 비누 등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자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스위스 최대의 유통마트 미그로, 2700여 키워 생산농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뉴질랜드의 제스프리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동조합입니다.

국내사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라면 아마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을 시작으로 주로 농·임·수산업 등 1차 산업과 금융업 등에서 자발적이기보다는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 설립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과 같은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두 달 만에 전국에 34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마쳤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협동조합이 바람직한 경제모델로 잘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동조합의 탄생배경>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확립과 발달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자유경쟁과 사적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곧 경쟁의 심화과정이고 이는 곧 사회적 약자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즉,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불가피하게 임금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들은 대자본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대자본에 대한 자기방어수단으로써 자주적인 조직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로써 협동조합이 시작된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산업혁명의 성공을 통해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전한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20세기에 유럽과 북미 등 전세계 각지로 확산된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성공한 협동조합으로는 영국의 로치데일협동조합을 들 수 있는데요. 1844년에 28명의 방직공들이 모여 자율적이고 공정한 규율을 정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을 사고파는 협동조합을 직접 경영했다고 합니다.

<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6~36쪽 참조>

1.1.2. 협동조합의 특징과 좋은 점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의 차이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차이

협동조합은 엄연히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 즉 기업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협동조합의 특징,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볼까요?

- √ 첫째, 주식회사가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라면, 협동조합은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입니다.
- √ 둘째,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결정되지만 협동조합은 다수에 의한 평등한 지배가 가능합니다.
- √ 셋째,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주식회사는 출자배당을 우선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용배당을 우선합니다.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소유제도	소유자	조합원	주주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지분거래	없음	가능
	가치변동	출자가격 변동없음	주식시장에서 수시로 변동
	투자상환	상환책임 있음	상환책임 없음
통제제도	의결권	1인1표, 다수의 평등한 지배	1주1표, 소수 대주주의 지배
	경영기구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대주주의 자체경영
수익처분제도	내부유보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사회적 협동조합은 100% 유보	내부유보는 제한적
	이용배당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출자배당에 선행함	없음
	출자배당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하며 배당률 제한함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실시하지 않음)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하며 배당률 제한 없음

<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8쪽 참조>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개인 사업이라기보다 조직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안정성보다 이익의 극대화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은 점

경제주체별 효과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해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 참여 확대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물가안정, 경제안정 등의 경제적 효과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육아 고민도 협동조합으로 풀어보세요!>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홈페이지(<http://www.gongdong.or.kr/>)를 방문해 보세요! 가까운 지역의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안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1.3. 협동조합의 종류

누구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전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8개 종류의 협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바로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인데요. 각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의 개별법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협동조합들은 국가의 강력한 지원과 통제를 받으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자립과 자조라는 협동조합의 본래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면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민간차원의 오랜 운동 끝에 비교적 최근에 제도화 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즉 생협의 경우 협동조합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잘 지키면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줌으로써 협동조합으로써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후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3항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설립 가능해진 협동조합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출처 : 인천시 부평구 공식블로그 「공감부평」)

사회서비스 영역의 보건의료, 보육, 스포츠 동호회 등에서 활용

- √ 보건의료, 공동육아, 공동어린이집, 대안학교 등의 교육 및 보건, 복지서비스
- √ 예술,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사업, 문화유산 보존 또는 활용, 산림 보전 및 관리
- √ 간병 및 가사지원, 고용지원,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등의 사업영역

신규창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 청년창업, 소자본 창업, 벤처기업, 공동연구 개발 등의 창업 활성화(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공동출자로 설립,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구매 및 공동홍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기업 진출에 대응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 가능)

고용안정화 및 노동통합

- √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위사업체를 노동자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함으로써 고용 안정화 및 저임금 해소
- √ 학습지방문, 대리운전, 청소, 경비, 컨서비스 등 분야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 √ 장애인, 취약계층 등 한계노동자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제공

주택, 에너지 등 공공재 확대

- √ 주택협동조합 형태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공동 주택을 건축한 뒤 공동소유로 관리, 운영
- √ 지역주민의 공동출자로 풍력 또는 태양광발전소를 전력공급협동조합 형태로 설립, 운영해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 공급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아파트 주민회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청소, 세탁, 택배, 가사돌봄 등의 종합생활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

지역경제 선순환 기능 강화

√ 협동조합 간의 협동원칙에 따라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킹 활성화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가능

√ 지역특산품 및 자연자원 활용, 주민주도의 지역개발 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가공을 연계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가능한 수많은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종류	개념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결국 각각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연합하여 이루는 조직이므로 결국 협동조합을 만들 경우,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있는데요.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구분	항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 통 점	최소설립인원	5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의결권	1인 1표 (「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91조)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및 제91조)	
차 이 점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사업 범위	사실상 제한 없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주사업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어야 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설립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금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세제상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협동조합 기본법」 제99조)
	잉여금 적립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1항)
	행정기관의 감독	없음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

위와 같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약간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양자는 엄격히 말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받게 되는 인증제도의 하나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참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① 경영지원, ②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교육훈련 지원, ③ 시설비 지원, ④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서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5호).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사회적기업](#)>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협동조합 설립·운영

2.1. 협동조합 설립

2.1.1. 협동조합 설립절차

1단계 : 발기인 모으기

발기인 수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및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79쪽 참조].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정관 작성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go.kr) -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_8~43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설립동의자 모집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4항).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

5단계 : 설립신고하기

설립신고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2호서식).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6.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내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위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3항).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8호서식).

6단계 : 사무인계하기

사무인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1항).

7단계 : 출자금 등 납입하기

출자금 납입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2항).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출자의 형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8단계 : 설립등기하기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소 성립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및 제61조제1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제4항).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협동조합 설립, 도움받아 보세요!>

지금까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다보면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설립할 수 있을 듯 하지만 막상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담부서를 두거나 조례 등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권역별 지원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및 주소 및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협동조합 운영

2.2.1. 기관 및 조직

협동조합에는 어떤 기관을 두어야 하나요?

협동조합의 기관

협동조합의 '기관'이란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외부에 대하여 행동하고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정한 조직을 말하며, 기관의 행위는 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

총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협동조합의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의 변경 ·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 조합원의 제명 · 탈퇴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p>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결산보고서의 승인 · 감사보고서의 승인 ·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p>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는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28조제4항) .

총회소집은 이사장이 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3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5항)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1항) .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

대의원총회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면 총회의 설립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 .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2항) .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31조제3항) .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

31조제4항) .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5항) .

대의원총회는 총회에 준하여 운영되고,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6항) .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 .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p>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p>

※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제4항) .

임원진의 구성과 직무 등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의 개념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1항) .

임원진의 구성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반드시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비조합원도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됩니다. 이 경우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찾기 쉬운 생활법령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둡니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5항).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임원의 직무

이사장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1항).

이사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2항).

위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3항).

감사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제1항).

또한, 이사장 및 이사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제3항).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제2항 및 제4항).

협동조합은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으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제5항).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합니다(「협동조합

찾기 쉬운 생활법령

기본법」 제43조제1항) .

감사를 두지 않은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3조제2항) .

임원의 의무와 책임

직무의 성실수행의무

임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 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1항) .

겸직금지의무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3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 √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44조제5항) .

손해배상책임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

위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와 의결에 참가하고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 .

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40조제1항) .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제2항) .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

선거운동 제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1항).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 포함)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3. 1. 또는 2.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2항).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3항).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4항).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3항제2호).

선거관리위원회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8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8조제2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2.2.2. 조합원

조합원의 자격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또한,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외국법인도 외국인 출자(出資)규제 관련 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하지만 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이처럼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제1항).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제2항).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의 권리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 원칙에 의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3호).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2항).

√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3항).

√ 위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4항).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2항).

그 밖에 조합원은 제명 전 의견진술권, 임원 해임 요구권, 서류열람권 및 사본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9조제3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참조). 조합원은 이 사업이용권을 행사하여 협동조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는 달리 잉여금배당청구권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협동조합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보전금과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1항).

- √ 위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2항).
- √ 위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3항).
- √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위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4항).

또한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제1항).

조합원의 의무와 책임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2항).

- ※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1호).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3항).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4항).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함)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함)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찾기 쉬운 생활법령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총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
- √ 납입출자금 총액

조합원이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

- ※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2호)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5항).

Q. 집 근처에 생협이 있어 이용해보려 했더니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을 내야 한다더군요. 돈을 내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왜 굳이 출자금까지 내야 하나요?

- A.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의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고, 조합원 1인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되며,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 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구조사례](#)>

2.2.3. 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의 사업

협동조합의 사업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

다만,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2항).

즉,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등록·허가·면허·승인·지정 등을 받아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예를 들어, 버스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못하면, 운수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사업의 이용

조합원의 사업이용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이용은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175쪽 참조).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 서비스 이용 등 조합원이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공동주차장 이용 등 조합원이 수익 창출을 위한 생산품 출하·공동 자재구매·공동판매·공동브랜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에서는 대리운전협동조합의 대리운전기사 고용,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 고용 등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그 밖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비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4호).

2.2.4. 협동조합의 운영

내부규정의 제·개정

정관변경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내부규정으로서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3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협동조합 등의 변경 신고서](#)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위의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3항).

협동조합은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중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1항).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

규약 또는 규정의 변경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7조).

규약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총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하며, 정관과 달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필요없이 총회의 의결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

규약의 예로는 총회운영규약,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선거관리규약, 잉여금배당규약 등이 있습니다.

규정은 정관,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한 내부규정으로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제3호).

규정의 예로는 이사회운영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이 있습니다.

우선출자 발행

우선 출자의 발행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함)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함)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기총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

√ 납입출자금 총액

찾기 쉬운 생활법령

조합원이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명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3항).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4항).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5항).

※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2호).

공직선거 관여금지

공직선거 관여금지 및 위반 시 제재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1항).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제117조제3항제1호).

회계관리

협동조합 회계관리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

적립금 적립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2항).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1항).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2항).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3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결산보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1항).

협동조합은 위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2항).

출자감소 의결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

협동조합은 위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2항).

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3항).

운영의 공개

운영사항 공개

협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1항).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서류비치 및 열람

협동조합은 위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2항·제3항).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서류비치 및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경영공시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또는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공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업결산 보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결과 보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3호).

협동조합의 감독

협동조합 활동사항의 감독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2 및 제15조제1항 참조).

조합원 수가 5명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

※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 합병·분할·해산

2.3.1. 협동조합 합병

"협동조합 합병"이란 무엇인가요?

"합병"의 개념

협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통합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협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재산관계 등이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협동조합 또는 신설협동조합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17쪽 참조).

합병의 유형

합병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17쪽 참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유형	내용
흡수합병	합병의 당사자가 된 협동조합의 일방만이 해산·소멸되고 다른 일방의 협동조합이 그 소멸된 협동조합을 흡수하여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존속하는 형태
신설합병	합병의 당사자로 된 모든 협동조합이 해산·소멸함과 동시에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그 소멸된 협동조합 모두를 합체하는 형태

협동조합의 합병절차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의 당사자인 협동조합은 우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총회의 의결

합병의 당사자인 협동조합은 각자의 총회에서 합병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합병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합병의 의결이 있게 되면 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1항 및 제53조제1항·제2항).

이 경우 채권자의 이의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보장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1항 및 제53조제3항).

한편,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1항 및 제54조).

신설협동조합 등의 창립총회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의 경우 위에 따라 합병 전 협동조합의 각 총회에서 합병을 의결한 후에는 신설되는 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56조제4항).

신고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2항).

합병에 따라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특별히 설립절차를 거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56조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찾기 쉬운 생활법령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5항)

등기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5조제1항).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5항).

- √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등기

해산등기를 할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설립등기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

- √ 목적
-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 설립신고 연월일
-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경우 주소는 제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4항 및 제5항).

- √ 설립신고서
- √ 창립총회의사록
- √ 정관의 사본
- √ 채권자 이의신청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

합병의 효과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3항).

합병으로 해산·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합병의 의결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존속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5쪽 참조).

이 경우 해산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기존에 가졌던 출자좌수에 따라 존속 협동조합 또는 신설 협동조합의 출자의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5쪽 참조).

다만,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경우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조합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창립총회, 설립신고 및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및 제26조).

합병의 한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이에만 합병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6항).

※ 단, 협동조합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7항).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2.3.2. 협동조합 분할

협동조합 "분할"이란 무엇인가요?

"분할"의 개념

협동조합의 "분할"이란 합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협동조합이 2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6쪽 참조).

분할의 유형

분할의 유형은 분할되는 협동조합이 분할 후에 해산·소멸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6쪽 참조).

유형	내용
존속분할	분할되는 협동조합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형태
소멸분할	분할되는 협동조합이 소멸하고 모두 새로운 협동조합들로 분할되는 형태

찾기 쉬운 생활법령

협동조합의 분할절차

분할계약서 작성

분할하려는 협동조합은 우선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총회의 의결

분할하려는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분할계획서 등 분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

분할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분할의 의결이 있게 되면 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항 및 제53조제1항·제2항).

이 경우 채권자의 이의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보장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항 및 제53조제3항).

한편,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1항 및 제54조).

신설협동조합의 창립총회 의결(신설협동조합의 경우)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절차와 마찬가지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제4항 및 제56조제4항).

신고

협동조합이 분할할 경우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절차를 거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신고도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56조제4항).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등기

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이 분할과 관련하여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② 분할로 인하여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21일 이내에 존속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

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4항 및 제5항).

- √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등기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

- √ 목적
-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 설립신고 연월일
-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4항 및 제5항).

- √ 설립신고서
- √ 창립총회의사록
- √ 정관의 사본
- √ 채권자 이의신청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등기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어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

분할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분할의 효과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3항).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분할의결 당시 정한 존속협동조합 또는 신설협동조합의 조직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분할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 또는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갖게 됩니다(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

2013, 232~233쪽 참조).

분할의 한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이에만 분할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6항).

※ 단, 협동조합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7항).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2.3.3. 협동조합 해산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그 활동을 정지한 이후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서 협동조합의 법인격 소멸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는데, 해산으로 협동조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적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해산의 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인 경우에는 청산절차없이 소멸하고, 해산사유가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4쪽 참조>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협동조합의 해산절차는 해산의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는 해산의 사유를 기준으로 협동조합의 해산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의 경우

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며, 이에 해당하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청산인의 선임

찾기 쉬운 생활법령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제1항).

√ 이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제2항).

해산신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2항).

√ 이때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4항).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민법」 제87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 협동조합의 청산인이 위의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2항제1호).

<청산 시 채무변제 절차 및 방법>

1.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1항 전단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①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②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0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③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2)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2. 변제기 미도래 채권 및 청산제외 채권의 변제

(1) 청산 중의 협동조합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그 밖의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91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2)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3. 잔여재산의 처리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제1항).

조직변경시에는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제2항).

4. 청산 중 파산선고의 신청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청산인의 임무는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종료합니다(「민법」 제93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청산사무의 종결 및 결산보고서의 총회 승인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3항).

√ 이때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4항).

√ 청산인이 위 사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2항제1호).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제1항).

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제2항).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의 경우

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됩니다(『[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34쪽).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

협동조합이 파산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절차에 따라 소멸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

※ 협동조합의 해산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산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해산의 효과

협동조합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면 이에 따라 협동조합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협동조합은 청산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재하게 되고,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소멸됩니다(「민법」 제81조 및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26쪽 참조).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3.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3.1.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기본적으로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설립절차는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에서는 협동조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절차는 이 콘텐츠 <[협동조합 설립·운영-협동조합 설립-협동조합 설립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1단계 : 발기인 모으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및 제91조).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76~113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와 달리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5단계 : 설립인가 신청하기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약력이 포함된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해당 연도의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6.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찾기 쉬운 생활법령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을 인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3항).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4항).

※ 기획예산처장관이 위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5항)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설립인가의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설립인가의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사무장 개인 소유의 병원을 말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면 비의료인의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가 되는 등 탈법적 의료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합니다.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결혼이민자
 - √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 √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 3. 1인당 최고출자금에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일 것(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 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 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로 하여야 함)
 - √ 6촌 이내의 혈족
 - √ 4촌 이내의 인척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 √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5.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함)마다 위의 요건(이 경우 위 요건 중 '설립동 의자'는 '조합원'으로 봄)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6단계 : 사무인계하기

설립인가를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1항).

7단계 : 출자금 등 납입하기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2항).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91조).

출자의 형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91조).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3항).

8단계 : 설립등기하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1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찾기 쉬운 생활법령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2항 및 제4항).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3항).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를 아시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과 한국 내 적응을 위해 운영되는 카페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소셜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카페오아시아'는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돕기 위해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경영지원, 카페 창업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페오아시아'는 가맹점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우리사회에 잘 뿌리내려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출처: [카페오아시아 홈페이지 참조](#)>

3.2.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3.2.1. 기관 및 조직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어떤 기관을 두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외부에 대하여 행동하고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정한 조직을 말하며, 기관의 행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기관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관하여는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

※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설립·운영-협동조합 운영-기관 및 조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진의 구성과 직무 등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진의 구성과 직무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제92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임원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진 구성, 임원의 직무 및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

※ 협동조합의 임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설립·운영-협동조합 운영-기관 및 조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2. 조합원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의 적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와 책임 등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이용권 등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조합에의 출자의무를 갖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협동조합에서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을 갖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

출자금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제2항).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0조 전단).

√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손실액납입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제2항 및 제90조 후단).

※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와 책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설립·운영-협동조합 운영-조합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3. 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달리 다음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1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으로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 중,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의미함)사회의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회적협동조합도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3항 및 제94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2/3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고, 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4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5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회 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사업
소액대출	불가능	·조합원 대상 ·납입 출자금 2/3한도
상호부조	불가능	·조합원 대상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

<출처: 협동조합 (www.coop.go.kr) -운영안내-협동조합 운영-사회적협동조합>

<1호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도시락을 소개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탄생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바로 '행복도시락 (www.happydosirak.org)' 인데요. '행복도시락'은 대기업이 후원 (행복나눔재단) 하고 후원받는 곳 (사회적기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의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보다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주민들의 권익, 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답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일자리 안정성은 검증됐다고 볼 수 있죠.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도시락', 어떤 곳인지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알아보까요?

1. 행복도시락은 어떤 일을 하나요?

행복도시락은 결식 이웃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1년 말 29개 센터 중 20곳이 행복나눔재단과 함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2. 행복도시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06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 서귀포와 군산지역에 부실도시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건빵 몇 개만 들어있는 도시락이 있는가 하면 메추리알 몇 개가 든 도시락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급식의 위생상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게 된 것이 행복도시락입니다. 질을 높이면서 영양 상태까지 고려한 도시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고용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해보자는 취지로 정부, 지자체를 비롯한 대기업, NGO가 다자간 협력모델로 행복도시락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체계적인 위생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취약계층을 고용해 스스로가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3. 행복도시락은 기존의 시스템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식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질 높은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도시락을 받는 연령대에 맞춰 메뉴개발을 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아이들이 더 많이 섭취해야 할 영양소가 있고 어른들이 더 많이 섭취해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별화 해 연구개발에 힘썼고, 올해부터는 연령대별 맞춤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사실 위와 같은 활동만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기업의 행사 도시락이라든가 케이터링(전문 출장 뷔페) 같은 형식의 수익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얻은 수입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침에 따라 급식단가에 20% 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5. 사회적 협동조합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있다면?

가장 역점을 두고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급식문화 조성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급식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우선 첫 번째고,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일자리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션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노력해 갈 생각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사업 이용

조합원의 사업이용

조합원은 당연히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비조합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회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다만,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량의 50/100의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응급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혼이민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해당 조합(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함)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에 따른 공급량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량을 산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비조합원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4호).

3.2.4.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내부규정의 제·개정

정관변경

정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내부규정으로서 그 변경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92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위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86조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중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64조제1항 및 제110조).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3항·제4항 및 제110조).

규약 또는 규정의 변경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7조 및 제88조).

규약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총회에서 제정·변경해야 하며 정관과 달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가 필요 없으므로 총회의 결의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92조).

규약의 예로는 총회운영규약,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선거관리규약, 잉여금배당규약 등이 있습니다.

규정은 정관,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한 내부규정으로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제3호 및 제92조).

규정의 예로는 이사회운영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 관여금지

공직선거 관여금지 및 위반 시 제재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1항).

누구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제 117조제3항제1호).

회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및 제100조).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 및 제100조).

적립금 적립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손실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1항 및 제3항).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2항).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1항).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결산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1항 및 제100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2항 및 제100조).

출자감소 의결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 및 제100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2항 및 제100조).

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100조).

운영의 공개

운영사항 공개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적극 공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제1항).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서류비치 및 열람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제2항 및 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서류비치 및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경영공시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 활동 상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결과 보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위반 시 제재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3호).

관리 및 감독

사회적협동조합의 관리·감독

협동조합의 경우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되, 별도의 지원도 없으며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감독도 없습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 제85조제1항, 제111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8호 참조).

업무감독

찾기 쉬운 생활법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1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5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2항).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4항)

기획예산처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3항).

1. 조합원 수가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설립인가의 취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1항제9호).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시정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찾기 쉬운 생활법령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3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0호).

※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3. 합병·분할·해산

3.3.1.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사회적협동조합 "합병"이란 무엇인가요?

"합병"의 개념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재산관계 등이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의 유형

합병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17쪽 참조).

유형	내용
흡수합병	합병의 당사자가 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방만이 해산·소멸되고 다른 일방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소멸된 사회적협동조합을 흡수하여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존속하는 형태
신설합병	합병의 당사자로 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소멸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그 소멸된 사회적협동조합 모두를 합체하는 형태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절차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의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우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총회의 의결

합병의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은 각자의 총회에서 합병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합병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7호·제2항 및 제92조).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합병의 의결이 있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해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제2항 및 제101조제11항).

이 경우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101조제11항).

한편,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신청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및 제101조제11항).

신설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의 경우 위에 따라 합병 전 사회적협동조합의 각 총회에서 합병을 의결한 후에는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특히 신설합병으로 인가를 신청할 경우,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및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총회의사록에는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9호).

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제1항).

합병으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5항).

- √ 설립인가서
- √ 창립총회의사록
- √ 정관의 사본
- √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등기를 할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제2항 및 제3항).

합병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합병의 효과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3항).

합병으로 해산·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합병의 의결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5쪽 참조).

이 경우 해산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기존에 가졌던 출자좌수에 따라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의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5쪽 참조).

다만,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경우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조합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창립총회, 설립신고 및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5쪽 참조).

합병의 한계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만 합병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6항).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7항).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3.3.2. 사회적협동조합 분할

사회적협동조합 "분할"이란 무엇인가요?

"분할"의 개념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이란 합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2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의 유형

분할의 유형은 분할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분할 후에 해산·소멸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6쪽 참조).

유형	내용
존속분할	분할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형태
소멸분할	분할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멸하고 모두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들로 분할되는 형태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절차

찾기 쉬운 생활법령

분할계약서 작성

분할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우선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총회의 의결

분할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에서 분할계획서 등 분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분할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7호·제2항 및 제92조).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분할의 의결이 있게 되면 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해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제2항 및 제101조제11항).

이 경우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101조제11항).

한편,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4조 및 제101조제11항).

신설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의 의결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절차와 마찬가지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이 분할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특히 분할로 새로 성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및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총회의사록에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려는 조직대상 및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9호).

등기

변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이 분할과 관련하여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된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21일 이내에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회장이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0조).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

64조제4항·제5항 및 제110조).

- √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등기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이사장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1항 및 제3항).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2항).

- √ 목적
-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 설립인가 연월일
-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4항 및 제5항).

- √ 설립인가서
- √ 창립총회의사록
- √ 정관의 사본
- √ 채권자 이의신청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어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분할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분할의 효과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3항).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분할의결 당시 정한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분할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갖게 됩니다(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2~233쪽 참조).

분할의 한계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만 분할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6항).

3.3.3.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활동을 정지한 이후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 소멸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는데, 해산으로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적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해산의 사유가 합병 또는 분할인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해산사유가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파산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4쪽 참조>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절차는 해산의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는 해산의 사유를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며, 이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청산인의 선임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제1항).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登記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제1항 및 제110조).

√ 이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7조제2항 및 제110조).

해산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취임 후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청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행정기관을 말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4호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제2항).

- √ 이때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제4항).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 √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귀속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 ①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②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 ③ 비영리법인·공익법인
- ④ 국고

- ※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인이 위의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2항제1호).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 및 제110조).

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0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됩니다(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4쪽 참조).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파산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소멸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 및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8쪽 참조).

설립인가의 취소에 의한 해산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해 해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립인가의 취소처분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제4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산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해산의 효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된다(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의 경우는 예외).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청산의 범위에서만 권리능력을 갖게 되며,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은 소멸됩니다(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9쪽 참조).

4. 연합회 설립·운영

4.1. 연합회 설립

4.1.1. 연합회 설립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사이의 협동 필요성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사이의 협동 필요성(출처: 기획예산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198~204쪽 참조).

일반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대규모 주식회사들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대기업과 경쟁하기란 쉽지 않으며,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대기업의 행태에서 나타나듯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영역에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경쟁하고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이미 다양한 기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들과의 협력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의 협동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4호).
- ※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5호).

연합회의 설립

연합회의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역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으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모여 만들 수 있습니다.

연합회 설립절차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1단계[발기인 모으기] :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2단계[정관 작성하기]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은 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72조).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44~7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회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4항).

4단계[창립총회 개최하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4항).

5단계[설립신고하기]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2호서식).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

6.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2항).

6단계[사무인계하기] : 신고확인증을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72조).

7단계[출자금 등 납입하기] :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제72조).

회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4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76조).

출자의 형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76조).

8단계[설립등기하기] : 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금 납입이 끝나고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61조제1항 및 제72조).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제3항 및 제84조).

- √ 협동조합연합회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 설립신고 연월일
-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경우 주소는 제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①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어야 한다는 점 ②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점 이외에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신규 설립할 경우에는 협동조합 신규설립절차를 참조하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및 제115조).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는<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_114~144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합회의 설립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제1항).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1.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하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이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이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신고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함)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제2항).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규정을 준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설립 규정을 준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제1항, 제17조 및 제19조).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제2항,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

※ 이중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알림마당-자료실-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_145~181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연합회 운영

4.2.1. 연합회의 조직

기관

총회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중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최종 의사결정기관은 총회이고, 연합회의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7조,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6).

대의원총회

회원 수가 많아지면 총회의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수가 200개 이상인 연합회의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1항, 제79조, 제115조제1항, 제115조의6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대의원총회는 총회에 준하여 운영되고, 연합회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6항, 제79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6).

임원

임원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1항, 제79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6).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8조,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6).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지만 회장의 경우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79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6).

만약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을 해임하려 한다면 회원은 회원 1/3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제1항, 제79조 및 제115조제1항).

만약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을 해임하려 한다면 회원은 회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제115조의6).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의 기관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9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6).

회원

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의 조합으로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3조제1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4제1항).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제1항,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다만,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3조제2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4제2항).

회원의 권리

탈퇴권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찾기 쉬운 생활법령

기본법」 제74조제1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5제3항).

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4조제2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5제3항).

- √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합회를 탈퇴할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예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을,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예에 따라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의 예에 따라 지급환급청구권 또는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27조, 제76조, 제89조, 제90조, 제115조제3항, 제115조의5제1항 및 제2항).

※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조합원> 부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5조,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5제3항).

제명 전 의견진술권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1항,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 √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합회는 회원을 제명할 경우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2항,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위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3항,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회원의 출자의무

회원은 기본적으로 연합회에 출자의무가 있고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 제5항,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40/10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

22조제2항, 제76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

- ※ 연합회에 대한 협동조합의 출자의무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예에 따르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의무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예에 따릅니다.
- ※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조합원](#)> 부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2. 연합회의 사업

연합회의 사업

연합회의 사업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제1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제2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

연합회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제3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

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1조제1항, 제115조의7,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31조의6).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1조제2항 및 제115조의7).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1조의6제2항).

회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보건·의료 사업(다만,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총공급량의 50/100의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1조제2항,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

4.2.3. 연합회의 운영

회계관리

회계관리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제82조, 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 제82조, 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적립금 적립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잉여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제3항, 제82조, 제97조제1항·제3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구분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	잉여금의 30% 이상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2항, 제82조, 제97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1항, 제82조, 제98조제1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잉여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2항, 제82조, 제98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찾기 쉬운 생활법령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함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의 순서대로 처리함
※ 배당을 할 경우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3항,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	※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

결산보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1항,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연합회는 위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2항,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출자감소 의결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위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2항,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3항,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운영의 공개

운영의 공개

연합회는 다음의 사항을 적극 공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1항, 제82조, 제96조제1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원 명부

회계장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서류비치 및 열람

위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동조합연합회의 채권자 및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96조제2항·제3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위반 시 제재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서류비치 및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경영공시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의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제1항·제82조, 제96조의2제1항, 제115조제3항, 제115조의8,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27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9조).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총회,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결과 보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 연합회 중 협동조합연합회는 ①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또는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3호).

※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및 감독

관리 및 감독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에 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및 제115조제3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취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제1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미달한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5. 2회 이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2).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을 준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3).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함)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관리·감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사회적협동조합 운영-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3. 합병·분할·해산

4.3.1. 연합회 합병·분할·해산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 적용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3조).

※ 따라서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을 하려는 경우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절차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협동조합 설립·운영-합병·분할·해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 적용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제3항).

※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을 하려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절차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합병·분할·해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9).

다만, 잔여재산 처리에 관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제1항)을 준용하고 있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을 준용하고 있습니다.